

다케시마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 한국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 전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DATA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합니다. 히가시지마(메지마), 니시지마(오지마)의 2개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약 0.21㎢입니다. 각 섬은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화산섬으로 식물과 식수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외무성

☑ 다케시마 영유에 관하여

각종 지도나 문헌으로 보아, 일본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을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閣議)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 영유를 재확인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사회의 일본 영유 확인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 규정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다케시마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찍이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또한 조선이 영유권의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함으로써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 다케시마를 라인 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라인 내로 출어한 일본어선이 한국측에 나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며 일본측에는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1953년 7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한국 관헌에게 충격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숙사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대응

일본은 이와 같은 한국측의 불법 점거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1954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해 왔으나, 한국측은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은 20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국제법에 의거해 냉정하고 평화적인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일본은 바라고 있습니다.



▲1909년 경의 다케시마어렵회사 (사진 : 가와카미 켄조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 (고론소인(古今書院))제공)

▶다케시마에서는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가 왕성했다. (1930년 경) (사진 : 개인 소장(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제공))



In the Declaration. As regards the island of B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한 1951년 8월의 미국 러스크 국무차관보(극동담당) 발신의 서한(사본)



한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

▶1953년 7월, 다케시마 주변 해상에서 한국측의 충격을 받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사진 : 오미유리신문사)

